# 각급법원(제1,2심)
#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11월 10일 제279호


## 민 사


1 수원고법 2026. 6. 26. 선고 2025나1379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 확정 …… 533

**안과 전문의인 甲과 乙이 상호를 공유하는 안과 의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동업약정에 따른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과 乙이 丙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데, 甲과 乙 사이에 장기간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자 甲이 乙과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丙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대립으로 인하여 丙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丙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丙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인 甲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甲이 丙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에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안과 전문의인 甲과 乙이 상호를 공유하는 안과 의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동업약정에 따른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과 乙이 丙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데, 甲과 乙 사이에 장기간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자 甲이 乙과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丙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사안이다.

① 丙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의 임기는 이미 수년 전 만료되었고, 네트워크 의원으로는 乙이 운영하는 지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새로운 참여자의 모집, 목적 사업의 다각화 등 활동 영역의 확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丙 회사의 당기순손익도 급감하는 등 丙 회사의 업무는 현저한 정돈상태에 이르렀고 丙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은 요원한 상태로 보이는 점, 甲과 乙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고, 수년간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등 양측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甲과 乙은 주주총회 의결권 동수라는 교착 상태로 인해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고 있고, 乙에게 丙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대립으로 인하여 丙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丙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② 甲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산 결의나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丙 회사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甲이 공개시장을 통하여 丙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업약정의 해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丙 회사의 주식이 타에 매각되는 것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丙 회사는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甲과 乙이 아닌 다른 주주가 없어 단체성을 강하게 가지는 전형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구성원에서 폐쇄성이 강한 인적 결합의 성격을 가지는 회사로서, 다수결 원리보다는 주주 간의 신뢰가 강조되는 인적 주식회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丙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인 甲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甲이 丙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에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이다.

**2 대전지법 2026. 9. 3. 선고 2025가합20081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 확정 …… 541**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甲 등이 '임금협상,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및 파업을 하였고, 파업이 종료된 후 한국철도공사가 위 파업의 목적이 '수서행 KTX 운행 관철'이라는 전제로, 甲 등이 불법파업을 기획, 주동 내지 이에 참가하여 한국철도공사 내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 등에게 견책, 감봉 1월,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甲 등이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파업의 목적에 임금협상 외에 '수서행 KTX 관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서행 KTX 관철'을 제외하면 甲 등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파업을 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甲 등이 파업을 기획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 甲 등이 '임금협상,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및 파업을 하였고, 파업이 종료된 후 한국철도공사가 위 파업의 목적이 '수서행 KTX 운행 관철'(이하 '현안사항'이라 한다)이라는 전제로, 甲 등이 불법파업을 기획, 주동 내지 이에 참가하여 한국철도공사 내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 등에게 견책, 감봉 1월,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甲 등이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철도노조는 파업 전에 지속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본 교섭이 결렬된 이후 파업에 나아갔으며, 파업 종료 이후 양측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 등이 체결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철도노조가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에 현안사항을 요구한 사정 등을 이유로 임금협상이 파업의 실제 목적이 아닌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현안사항을 제외하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므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인데, 파업 목적 중 일부인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과 같은 현안사항은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소, 철도 안전성 강화 등 철도운행 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점, ④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파업이 위 규정의 개정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위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파업의 목적에 임금협상 외에 현안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현안사항을 제외하면 甲 등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철도노조는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임금협상을 주요 목적으로 파업을 하였으므로, 파업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파업은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甲 등이 파업을 기획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3 광주지법 2026. 9. 17. 선고 2022가합58532 판결 〔손해배상(기)〕 : 항소 …… 549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乙 회사의 채권자들이 일부 상표권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甲 회사 명의의 일부 상표권이전등록이 말소되었고, 한편 위 등록상표 전부에 관하여 甲 회사가 이전등록을 받은 후에도 3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계속 중인 상태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甲 회사 명의의 일부 상표권이전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乙 회사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여전히 甲 회사이기는 하나, 甲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위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아 장차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甲 회사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甲 회사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乙 회사 등의 상표권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乙 회사의 채권자들이 일부 상표권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甲 회사 명의의 일부 상표권이전등록이 말소되었고, 한편 위 등록상표 전부에 관하여 甲 회사가 이전등록을 받은 후에도 3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계속 중인 상태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①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 회사 명의의 일부 상표권이전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乙 회사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여전히 甲 회사이기는 하나, ② 상표 불사용으로 인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위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아 장차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甲 회사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③ 나아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甲 회사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乙 회사 등의 상표권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 일반행정

4 **광주지법 2026. 3. 12. 선고 2025구합30664 판결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조치결과취소를구하는소〕 : 확정** ····· 560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甲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 교실에서 수업교사의 옷과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과 손 등을 할퀴는 등의 행위와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의 손과 팔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학급교체,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하였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甲에게 위 의결에 따른 조치를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甲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 교실에서 수업교사의 옷과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과 손 등을 할퀴는 등의 행위와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의 손과 팔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가)목에 따라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중 폭행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학급교체,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

하였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甲에게 위 의결에 따른 조치를 결정·통지한 사안이다.

①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비추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르는 법적 효과는 형벌이 아니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을 위한 조치일 뿐이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각 목에서 '범죄 행위' 문언은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상 위 형벌 규정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위의 '범죄 행위' 포함)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범죄 행위'와 고발의 대상인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7항은 형사상 고의나 책임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결여된 침해학생에 대하여, 관할청이 선택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교육적·선도적·치료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甲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한 이상, 그 행위는 '위 규정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신고받은 사안을 충실히 살펴 교원지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침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판단하여 각 항목의 점수 합계에 따른 조치의 가중·감경 없이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甲이 위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확인하고 甲의 장애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의 심각성 등 위 각 항목의 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교원이 '수업시간이니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지도하는 경우 이에 순순히 따르고, 교원의 지도에 따라 스스로 이를 닦고 컵을 이용하여 입을 헹구는 일상생활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이므로,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른 조치가 甲에게 선도적·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의 부모는 甲과 담임교사와의 관계, 부모와 담임교사와의 신뢰관계 등으로 담임교사 변경을 원하고 있었고, 甲의 장애 정도, 甲 가정의 상황 등에 비추어 甲의 장애를 이유로 1단계 감경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

기간 가정에서 甲을 보살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5 **울산지법 2026. 8. 27. 선고 2024구합50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확정** ····· 567

**甲이 로봇자재 관리 및 납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관리자 업무로 전환되어 로봇자재 관리와 납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추락하여(자살 추정) 사망하자,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甲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로봇자재 관리 및 납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관리자 업무로 전환되어 로봇자재 관리와 납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추락하여(자살 추정) 사망하자,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甲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한 사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연장근무 시간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甲이 사업장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도 근무를 이어가는 연장근로를 자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재해 무렵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근무내역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관리직으로 전환된 甲이 위 재해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사업장의 다른 동료들의 업무처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로 인해 할당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연장해 가며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의 업무 변동에 따라 급여가 상승했으나 이는 약 38만 원 수준으로, 甲의 연장 및 휴일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상은 甲 및 그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던 점, 甲이 자살을 결정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여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甲의 재해 당시 건강 상태, 가족들 사이의 관계 등 업무상 요인 이외의

요인으로 甲이 자살을 결정했을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甲이 자살하기 전 작성한 메시지 등에 의하면 甲이 자살을 결정한 결정적 요인은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가장으로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업무의 변경,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의 업무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형 사

6 **서울동부지법 2026. 8. 11. 선고 2025고정504 판결 〔의료법위반〕 : 항소 ····· 575**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안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리도카인(Lidocaine) 주사액과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주사액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명의 환자들에게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내원 환자들에게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안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리도카인(Lidocaine)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주사액 1cc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명의 환자들에게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현행법령상 명시적으로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사안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의료공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둘 때, 양·한방 의료행위의 가변성과 중첩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한의약 육성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한방의료기술의 과학화·정보화 등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염두에

둘 필요성도 있으나,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작용기전에 비추어 이들 의약품은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인 점,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효능과 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환자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의학적 조치, 복약정보 등에 비추어, 이들 의약품은 그 사용에 있어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점, 다수의 한의학 교재에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에 대한 설명과 사용례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교재 등의 내용은 이들 의약품의 서양의학적 기전을 설명한 것이거나 그 효능·효과가 기존 한의학적 치료행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을 '완통약침'과 '염증예방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시술하였으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양의학적 약리기전에 따른 효능·효과를 이용하고자 이들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한방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감소·예방하기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사용된 경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된 사용인지 또는 보조적 사용인지에 따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소량을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기에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는 점, 매선 시술을 하는 한의사들이 과거 사용해오던 안전성이 떨어지는 섬수(두꺼비 독) 대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마취제로서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마취제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포섭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원 환자들에게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무렵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사용의 적법성에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덱사메타손은 종종 한의사의 불법 사용이 문제 되었던 스테로이드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물인 점, 이들 의약품 모두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서양의약품의 한 종류로 인식·관리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